



도민이 중심
신뢰받는 의회

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5. 4. 22.(화) 10:00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정일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: 2025년 4월 11일

○ 회부일자: 2025년 4월 14일

3. 제안이유

○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, 효율적인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 운영을 위해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 규정에서 불필요한 인용법령 삭제(안 제1조, 안 제2조)
-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문 정비(안 제6조~안 제10조)
-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개정이유 검토

○ 현행 조례는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에 따라 정보화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, 기존 국가정보화

기본법에는 조례로 위임한 규정이 없음

- 또한, 2020년 6월 9일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이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으로 전부개정 되었으나 지능정보화 기본법에도 조례로 위임한 규정이 없어 본 조례는 위임조례가 아니라 자치조례의 성격을 가지므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에서 인용법령을 삭제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1조와 안 제2조제3호의 불필요한 인용규정을 삭제함
 - －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위임조례가 아니므로 조례의 목적에서 인용규정을 삭제하여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,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에 있어 인용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한 것은 타당한 조치임
-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규정함
 - － 일반적으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의 설치·소속·기능을 먼저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규정함
 - － 이에 위원회 설치(위원회 구성 포함), 위원회 기능, 회의, 수당 순으로 규정된 현행 조례를 설치 및 기능, 구성, 위원장의 직무, 위원회 운영, 수당 등의 순으로 정비한 것으로 입법형식 상 바람직한 조치라 보여짐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정보화교육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

- 또한, 법제처의 「법령 입안 및 심사 기준」과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비추어 볼 때,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내용상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, 담당부서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음